

家計急変世帯対象給付 記入例

가계급변세대 대상 급부·기입례

굵은 선 테두리 안에만 기입해 주십시오.

이 신청서를 쓴 날짜를 기입

第1号様式の2

高校生等奨学給付金(家計急変)受給申請書

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(가계 급변) 수급 신청서

神奈川県立〇〇学校長 殿 (가나가와현립학교인 경우)

2025年7月10日

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受給を申請します。

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의 수급을 신청합니다.

申請者 (保護者等)	ふりがな	かながわ いくお	高校生等との関係	☒ 親権者(父) ☐ 親権者(母) ☐ 未成年後見人 ☐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☐ 主たる生計維持者 ☐ 生徒本人 ☐ その他()
	氏名	神奈川 育夫		
	住所	〒221-0057 横浜市神奈川区青木町〇〇-〇〇-〇〇	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	090-xxxx-xxxx
	※1月1日現在、상기와 다른 시정촌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우측란도 기입하십시오.	1月1日現在の住所	神奈川県 川崎市 〇〇区 〇〇町 〇〇番 〇〇号	☐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.
申請者 以外の 保護者等	ふりがな	かながわ たかこ	高校生等との関係	☐ 親権者(父) ☒ 親権者(母) ☐ 未成年後見人 ☐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☐ その他()
	氏名	神奈川 高子		
	住所	〒221-0057 横浜市神奈川区青木町〇〇-〇〇-〇〇	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	090-xxxx-xxxx
	※1月1日現在、상기와 다른 시정촌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우측란도 기입하십시오.	1月1日現在の住所	神奈川県 川崎市 〇〇区 〇〇町 〇〇番 〇〇号	☐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.

☐친권자(아버지)

☐친권자(어머니)

☐미성년후견인

☐미성년후견인인 수양부모

☐주된 생계유지자

☐학생 본인

☐기타()

보호자(친권자 등)의 주소·성명·전화번호(낮에 통화 가능한 것)를 기입하고, 고등학생 등과의 관계를 ☐에 체크

신청자 이외의 보호자 등이 있는 경우는, 성명을 기입하고, 고등학생과의 관계를 ☐에 체크

【1】対象となる高校生等について

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에 대하여】

ふりがな	かながわ きょうすけ	せいねん	昭和 21 年 5 月 5 日
氏名	神奈川 京介	んがっぴ	平成
在学する学校	学校名称	(国公立) 神奈川県立 〇〇高等 学校	1 年
	課程	☒ 全日制 ☐ 定時制 ☐ 通信制 ☐ 専攻科	
	在学期間	令和7年 4 月 1 日 ~ 年 月 日	
過去の高等学校等 における在学期間	学校名	年 月 日	課程
	立	年 月 日	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
	学校名	年 月 日	なし 1回 2回 3回 4回 不明
	立	年 月 日	☐ ☐ ☐ ☐ ☐ ☐

학생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

인정 기준일에 재학하고 있는(있던) 학교에 대해 기입

인정 기준일 이전에 상기 이외의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입

【2】振込先口座

【입금 계좌】

金融機関名	●● 銀行 信用金庫 信用組合・農協	本店・支店	支店コード	0 0 1	預金種目	ふつ 普通貯蓄
金融機関コード	1 2 3 4	本店・支所 出振所				
こうざばんごう 口座番号	1 2 3 4 5 6 7	口座名義人 (申請者)	※カタカナで記入してください カナガワ イクオ			

신청자 명의의 입금
계좌를 기입

県使用欄 (記入しないください。)

학교에서 사용하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.

円

【3】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ついて

【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】

보호자 등의 가계급변 상황에 대하여. 다음 사람의 가계 (급변) 상황의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.

①	☒	친권자(부모) 2명분 (단신 부임의 경우라도 친권자 2명분을 제출해 주십시오) 학생이 미성년(18세 미만)이고 친권자(부모)가 두 명 존재하는 경우
②	☐	친권자 1명분 (친권자가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,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인 경우는 그 사람은 제외한다.) · 이혼,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명인 경우 · 친권자는 2명이지만 가정 폭력이나 양육 포기, 실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1 명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
③	☐	미성년 후견인 () 명 분 [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(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)]
④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 (이하 '주된 생계유지자'라고 한다) (양친 등) 2 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한 경우로, 성인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
⑤	☐	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(주된 생계 유지자) 1명 ·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, ·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,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,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·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
⑥	☐	학생 본인 · 친권자,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, 학생 본인이 성인인 경우 등

①에서 ⑥ 중 어느 하나에 체크

【4】誓約・委任欄 ※ 신청자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.

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(위임)합니다.

신청자 성명 神奈川 育夫

<전 세대 공통>
○ 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. 또한 이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는 가나가와현교육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.
○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 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
○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은, 인정 기준일 현재,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조치비(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(모자생활 지원시설의 고등학생 등은 제외))의 지변 대상이 아닙니다.
○ 수업료 이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 등에 미납분이 있을 때는, 제가 지급 받는 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을 그 미납분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.
○ 【1】에서 기입한 신청 대상인 고등학생 등 본인은, 인정 기준일 현재, 생활보호법(1950년 법률 제144호) 제36조 규정에 의한 생업부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. (대상인 고등학생 등이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는 제외)

<신청자가 주된 생계 유지자인 경우 만>
○ 저와 고등학생 등 본인은 건강보험법 등에서의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와 동등한 관계입니다.

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, 신청자가 서명하십시오.

서명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<学校使用欄>

<学校受付印>

학교에서 사용하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.

学校の名称

学校長の氏名

職印